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7. 3(화) / 총 1매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고용석, 사무관 허원석, 주무관 남익용 • ☎ (044) 201-3573, 3574, 357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근로시간 단축 근무 첫날부터 장마·태풍에 현장 혼란” 보도 관련

- 우리부는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태풍·폭우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‘특별 근로연장 인가제도*’를 활용하여 각 현장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*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(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가능)
- 또한,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및 비용 증가에 대해 계약 변경이 가능토록 이미 지침을 마련(6.4)했고,
 -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‘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’를 개정(6.18)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원·하청 근로시간 상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비해 단독시공 금지, 감리 입회 확대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,
 -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민관 합동점검을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7.6. 매일경제) >

“근로시간 단축 첫날부터 장마·태풍에 현장 혼란” 보도 관련
 - 주52시간 근로제도가 본격 시작된 2일, 태풍으로 인해 밤샘 근무 등 빈번,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우려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